

— 구 미 시 지 역 보 건 의 료 계 획 안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4년간(2003~2006)의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 수립.
- 명확한 목표설정과 주민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 방향으로 민관 공감대 형성.

3. 주요내용

— 보건소 단위로 핵심사업, 일반사업으로 나누고 연도별 예산을 추정함. —

○ 핵심사업

- 영유아 성장발달검사, 보육시설 어린이 영양사업, 주간 재활실운영(구미)
- 성인병관리, 방문보건사업, 재활보건사업, 구강보건사업(선산)

○ 일반사업

- 생의 주기별 보건사업, 서비스 서비스제공별 보건사업, 기타사업(구미)
- 영유아, 임신부 건강관리, 노인이동 보건사업, 성인병 검진사업, 만성 전염성질환 관리사업, 급성전염성질환 사업(선산)

4. 참고사항

- 지역보건법 제3조(지역의료계획의 수립 등), 제4조
-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

5. 검토의견

- 지역보건법 제3조(지역의료계획의 수립 등)에 의거 지역의료계획을 수립하되 시장·군수는 시·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지사에게 제출되어야 하는 사안임.

- 사전에 지역주민, 보건의료기관, 단체,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,
- 지역보건법 제4조에 의거 장기보건의료 수요를 측정하되 장단기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와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장기계획안임.